

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07. 4. .
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구미시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협의회 위원을 「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」 등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계, 법조계, 사회단체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
- 평생교육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설의 대표자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배제하고, 조직개편이 되지 않는 명칭을 일부 수정하였음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8조제1항 중 “구미시 평생교육원장”의 명칭을 “구미시 평생교육센터장”으로 하고
- 안 제8조제1항 중 「구미시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추진협의회」 위원으로 구성하는 각호 중
 - “경상북도의회 의원 및 경상북도 교육위원”을 추가하였으며
 - “구미시 평생교육원장”을 “구미시 평생교육센터장”으로
 - “평생교육관련 기관·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”를 삭제하고
 - “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”를 “학계, 법조계, 사회단체, 체육관련단체, 사설교육단체, 주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”로 수정하였음

3. 참고사항

-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5항
- 교육기본법 제10조
- 평생교육법 제9조

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1항 중 “ 구미시 평생교육원장”을
“구미시 평생교육센터장”으로 하고

안 제8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부시장
2. 경상북도의회 의원 및 경상북도 교육위원
3. 구미시의회 의원
4. 구미시 평생교육 담당국장
5. 구미시 평생교육센터장
6. 경상북도 구미교육청 평생교육 담당과장
7. 학계, 법조계, 사회단체, 체육관련단체, 사설교육단체,
주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8조(구성) ①..... <u>구미시 평생교육원장</u>	제8조(구성) ①..... <u>구미시 평생교육센터장</u>
1. 부시장	1. 부시장
2. 구미시의회 의원	2. <u>경상북도의회 의원 및 경상북도</u> <u>교육위원</u>
3. 구미시 평생교육 담당국장	3. 구미시의회 의원
4. <u>구미시 평생교육원장</u>	4. 구미시 평생교육 담당국장
5. 경상북도 구미교육청 평생교육 담당과장	5. <u>구미시 평생교육센터장</u>
6. <u>평생교육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의</u> <u>대표자</u>	6. 경상북도 구미교육청 평생교육 담당과장
7. <u>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</u> <u>부한 자</u>	7. <u>학계, 법조계, 사회단체, 체육관련단체</u> <u>사설교육단체, 주민 등 평생교육에</u> <u>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u>
8. <u>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u>	

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언제, 어디서,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3조(평생교육의 영역) 평생교육의 영역은 성인기초교육 및 문해교육, 시민교육, 직업능력개발교육, 문화예술교육, 지역사회교육 등을 포함한다.

제4조(경비보조) 구미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·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 다만 경비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지도 및 지원) 시장은 평생교육단체·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·시설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2장 구미시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추진협의회

제6조(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추진협의회)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구미시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추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7조(기능)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
2.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·조정
3.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
4. 기타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8조(구성)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구미시 교육담당국장, 구미시 평생교육센터장, 구미교육청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1. 부시장
2. 경상북도의회 의원 및 경상북도 교육위원
3. 구미시의회 의원
4. 구미시 평생교육 담당국장
5. 구미시 평생교육센터장
6. 경상북도 구미교육청 평생교육 담당과장
7. 학계, 법조계, 사회단체, 체육관련단체, 사설교육단체, 주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,

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제9조(위원장등의 임무)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 당연직 위원인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(회의소집 등) ①협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.

②협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장 구미시 평생교육원 설치·운영

제12조(평생교육원 설치) 주민에게 통합적, 효율적,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미시 평생교육원(이하 “평생교육원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제13조(위치) 평생교육원은 구미시 관할구역 내에 둔다.

제14조(기능)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평생학습 관련 기관·단체 및 시설간 연계 협력
2. 시민대학 등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
3. 평생학습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보의 공유
4. 평생학습관련 실무자에 대한 연수
5. 기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5조(평생교육사 등) 평생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제4장 보 칙

제16조(관계기관 협조)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·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7조(수당등의 지급)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